

임원선거관리규정

[2012. 8.22, 2019.11.20 전문개정]

제정	1997.10.14	개정	2012. 8.22
개정	1997.11.11	개정	2012. 9.12
개정	1998. 2.10	개정	2014. 6.18
개정	2001. 2. 9	개정	2017. 1.18
개정	2001. 5. 8	개정	2017.11.15
개정	2001.10.16	개정	2019.11.20
개정	2005. 1.11	개정	2020. 9.23
개정	2005. 5.10	개정	2021.11.17
개정	2007. 1.16	개정	2022.11.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협회 임원선거에 적용하며, 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2019.11.20>

② 시도건축사회 또는 지역건축사회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협회”는 각각 “시도건축사회” 또는 “지역건축사회”로 본다. <개정 2014. 6.18>

③ 삭제 <신설 2014. 6.18, 삭제 2019.11.20>

제3조(선거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② 사무기구(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를 포함한다)는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지시와 지휘를 받으며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되, 위원회 결정사항은 7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2021.11.17>

③ 위원회는 선거가 혼탁해 지거나 과열이 있을 때 또는 후보자등(후보자과 예비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거관련 위반으로 신고되어 3회 이상 사실로 확인 된 때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등의 일일 선거 활동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④ 후보자등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18>

⑤ 이 규정에서 계산되어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상한다. <신설 2014. 6.18>

제3조의2(임직원 등의 중립의무) 협회 및 건축사회(지역건축사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협회 각 위원회 위원(장), 회원동호회 임원은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17.>

제2장 회장 선출

제1절 위원회

제3조2(선거공고) 삭제 <개정 2021.11.17>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해산) ① 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까지 설치하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일자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2019.11.20>

② 위원장은 현직에서 가장 가까운 전임회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③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시도건축사회별 회원수를 고려하여 위원장과 이사회가 동수로 지명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8>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등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6.18, 2021.11.17>

⑤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후보자등으로 등록을 하려면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2021.11.17>

⑥ 선거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4. 6.18>

⑦ 위원회는 제5조의2(선거공고), 제8조(선거인 명부), 제9조(후보자등록), 제9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에 명시하고 있는 각각의 선거사무 일정을 정함에 있어 해당 기한 이전 15일 범위 내에서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0>

제5조(위원회 업무) ① 위원회 업무의 주요내용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18>

1. 선거공고 및 관련사무
2. 후보자등의 등록
3. 선거인명부
4. 선거 및 관련사무
5. 선거홍보 및 광고
6. 투.개표 관리
7. 당선인 확정
8.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처분 및 결정
9.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신설 2014. 6.18>

1. 선거일
2. 후보자등의 등록 및 절차
3.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
4.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③ 삭제 <2019.11.20>

④ 선거공고는 선거공보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 6.18>

제5조의2(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00일 전에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월간건축사지 등에 1회 이상 선거를 공고한다. <중전 제3조의 2 이관 개정 2019.11.20>

제2절 선거인 등

제6조(선거인 및 후보자 등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정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4. 6.18>

② '후보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6.18>

③ '예비후보자'라 함은 제9조의2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6.18, 개정 2017. 1.18>

④ 이 규정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후보자등의 배우자, 그 직계가족, 선거운동원을 말한다. <신설 2021.11.17>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효력) ① 정회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6.18>

②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정회원이 아니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6.18, 2021.11.17>

③ 정관 제9조제3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나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사람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6.18>

제8조(선거인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 6.18>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때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 6.18>

- ③ 선거인명부의 공고내용과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우편, 기타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1회 공지한다. <신설 2014. 6.18>
- ④ 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은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5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18, 개정 2019.11.20>
-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신설 2014. 6.18>
- ⑥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0일 전에 확정한다. <신설 2014. 6.18, 개정 2019.11.20>
- ⑦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의 발급 신청을 한 때에는 사본으로 교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제3절 후보자

제9조(후보자 등록) ① 예비후보자는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된다. <개정 2014. 6.18>

② 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18, 2019.11.20>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
4. 선거공보 원고 및 선거용 명함
5. 기탁금
6. 선거운동원 명부 <신설 2017. 1.18>
7. 건축사 행정처분 증명서(선거공고일기준 직전 3개년도분) <신설 2021.11.17>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심사 결과를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8>

④ 후보자의 후보등록 마감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 등록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까지 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8, 2019.11.20>

⑤ 삭제 <2020. 9.23>

제9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 등록마감은 선거일 60일전까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아야 등록 된다. <개정 2017. 1.18, 2019.11.20>

②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18, 2017. 1.18, 2019.11.20>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상훈포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신설 2019.11.20>
 5. 서약서 <신설 2021.11.17>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설 2021.11.17>
 7. 제9조의3제1항에 의한 기탁금의 50% 선납
- ③ 위원회는 후보자등이 제출한 선거공보와 이력서상의 학·경력 및 상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0>
- ④ 전항의 선납된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후보자등의 사퇴 또는 후보자등의 귀책사유로 제16조의2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제17조에서 조문이관 정리 2017. 1.18>

제9조의3(기탁금) ① 기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② 기탁금은 선거관리 등 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탁금으로 선거비용이 부족한 때에는 협회 예산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 6.18, 2021.11.17>

③ 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해 입후보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우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선거비용 정산 잔액의 전액
2.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탁금 전액

④ 후보자등이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그 후보자등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협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한다. <개정 2014. 6.18, 2021.11.17>

1. 후보자등이 사퇴한 때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5% 미만인 때

3. 후보자등이 제16조의2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된 때. 이 경우 본인의 귀책 사유 또는 후보자등 관계인의 귀책사유에 한한다.

제10조(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의 사유 또는 후보자등 이외의 사유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제16조의2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낙선자는 불문에 부친다. <개정 2014. 6.18>

1. 후보자등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된 때

2. 고의적으로 후보자등의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정관 또는 제 규정이나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위반한 때
 5.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당선무효는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거나 선거당일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때 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 ③ 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개정 2014. 6.18>

- 제11조(후보자등의 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등의 등록사항 및 등록변경사항을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18, 2019.11.20>
1. 후보자 : 후보자 공고문, 입후보 소견서, 이력서, 선거공보 원고, 건축사 행정처분 증명서 <개정 2019.11.20, 2021.11.17>
 2.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공고문, 입후보 소견서, 이력서 <신설 2019.11.20>
- ② 위원회는 후보자등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선거인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 제12조(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등이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 ②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등은 당해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 6.18>

- 제13조(현직임원의 후보자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전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8, 2019.11.20>
1. 부회장
 2. 이사
 3. 감사
- ② 아래의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한다. <개정 2017. 1.18, 2019.11.20>
1. 협회 회장
 2. 시도건축사회 회장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무정지된 정회원은 선거종료 후 익일부터 그 직에 복귀한다. 다만, 제2호의 정회원이 당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20>

제4절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 및 범위)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 직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8, 2017.11.15, 2019.11.20>

1. 위원회가 직접 개최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2. 선거사무소 개설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3. 협회 정기간행물(시도건축사회 신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자기광고
 4. 후보자등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영
 5. 선거공보 또는 전자우편, 팩스, 서신 등을 통한 홍보
 6.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등 SNS를 통한 홍보
 7.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8. 후보자등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착용
 9.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
- ② 후보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는 1개소에 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8, 2019.11.20>
- ③ 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발급한 선거운동원 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8>
- ④ 삭제 <2017. 1.18>
- ⑤ 제1항 제5호의 전자우편과 제6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관계인을 포함한다) 1인당 총 10회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18>

제14조의2(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일로부터 후보자등록 직전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0>

1. 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
2. 예비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영
3.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

<본조 신설 2017. 1.18>

제15조(선거홍보) ①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선거홍보의 종류 및 방법 등은 각 호 중에서 선택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1. 선거공보
2. 협회 정기간행물

3. 후보자 합동토론회(인터넷 방송 포함)

4. 모바일 및 전자매체

5. 홈페이지

6.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후보자토론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4회 이내로 개최하며, 시도건축사회 또는 협회 산하기구가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토론에 관한 내용과 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2020. 9.23>

③ 후보자등이 협회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회수를 합하여 10회 이하로 제한하며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금 외에 후보자등이 별도로 부담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④ 제3항의 광고에 대한 시안은 광고 게시 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 하는 한 자유로운 광고를 제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18>

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위원회의 최종검수 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하며, 후보자로부터 선거공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에게 1회 발송 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제16조(선거운동 금지) ① 후보자등과 관계인, 임직원, 회원동호회 임원, 회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7. 1.18, 2019.11.20., 2021.11.17>

1.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접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도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운동원이 당해 후보자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협회 정기간행물에 후보자에 대한 집필, 논평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격의 보도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6. 대외적으로 건축사 또는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7. 제3자나 단체 및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시키는 행위

8. 그 밖에 위원회가 허가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행위

② 협회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은 제1항제5호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③ 삭제 <2012. 9.12>

- 제16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의 발언과 행위 및 위반사실과 시정여부 및 그 내용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 6.18>
-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과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2019.11.20., 2021.11.17>
1. 불문 또는 기각
 2. 주의
 3. 경고
 4. 후보등록무효(등록취소를 포함한다)
 5. 당선무효(당선취소를 포함한다)
 6. 투표무효(투표취소를 포함한다)
 7. 선거무효(선거취소를 포함한다)
 8. 선거권 박탈 <신설 2021.11.17>
 9.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청 <신설 2021.11.17>
- ③ 제2항의 처분과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효력이 있다. <신설 2014. 6.18, 개정 2019.11.20>
1. 후보등록무효는 선거 3일전일까지
 2.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는 취임일전일까지
 3. 투표무효는 선거당일
- ④ 위원회가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자료제출, 청문 등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18>
- ⑤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처분이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7>
- ⑥ 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처분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14. 6.18>
- ⑦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직무 또는 업무 수행이나 참여, 진술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6.18>

제5절 선거 및 투표

제17조(예비후보자 등록) <제9조의2로 이관, 개정 2017.1.18>

제18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직접, 비밀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선거인 1인 1표에 의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2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선거인이 직접 접속이 어려울 때에는 시도건축사회 또는 지역건축사회의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2019.11.20>

② 온라인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14. 6.18, 개정 2019.11.20>

1.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투표 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 직접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 과정이 검증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 ④ 제24조제3호의 사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칠 때에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신설 2014. 6.18>

제19조(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2021.11.17>

제20조(투표양식) ① 투표 양식은 제19조에서 정해진 웹 사이트 전자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 ② 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마감 후 위원회가 정한 날자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추첨하여 정한다. <개정 2014. 6.18>
- ③ 투표 서식은 기호에 따라 전자서식이 정해진 바에 따르되, 동명인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18>
- ④ 삭제 <2014. 6.18.>

제21조(투표 및 절차) ① 선거인은 제19조에서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 투표하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1. 사이트 접속 : 온라인투표 사이트
2. 로그인 : 로그인 코드 입력
3. 투표정보 조회 : 후보자 확인
4. 인증코드 요청 및 입력
5. 후보자 선택 투표
6. 투표 완료 확인

② 선거인은 자기의 투표행위에 대하여 투표가 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제22조(참관) ① 참관인은 투.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② 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정한 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한다. 다만, 참관인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관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8>

제6절 개표 및 당선

제23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참관인의 입회아래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 6.18>

② 투표결과 데이터 등은 당선확정 후 7일 이내에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기한다. <개정 2014. 6.18>

제24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1. 제19조의 온라인투표 사이트가 이상이 없음에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2. 제21조제2항의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3. 온라인투표 사이트 상의 문제로 선거인의 10% 미만이 기표가 되지 아니한 투표.
이 경우 차점자에게 해당 득표수를 합산하여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14. 6.18.>

제25조(당선확정) ① 당선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이 경우 유효투표의 20%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②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당선을 확정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③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 2인으로 7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4. 6.18>

④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4. 6.18>

⑤ 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18>

⑥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7절 재선거

제26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4. 6.18, 2019.11.20>

1. 제16조2제2항제4호의 사유로 후보자가 없거나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된 때
4. 단일후보에 대한 신임투표시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미달한 때

- ② 차점자를 당선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14. 6.18>
- ③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제26조의2(보궐선거) ① 정관 제21조제7항의 보궐선거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0, 2022.11.16>

- 1.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2. 잔여임기가 1년 미만 남은 경우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사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18]

제27조(이의신청) ①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거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명백하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된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제16조의2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처분과 결정을 회장 취임일 전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6.18>

제3장 이사 및 감사 선출

제1절 이사 선출

제28조(위원회의 설치) ① 회장의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0., 21.11.17>

-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 규정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7>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회장선거가 있는 해에는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장의 임원 선거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6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7>

제29조(보궐선거) ① 정관 제21조제8항에서 정한 보궐선거는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개정 2019.11.20., 2022.11.1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정관 제21조 제8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이 지명한 사람을 잔여임기 이사로 한다. 다만, 정관 제21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축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 이사가 보궐된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명한 사람을 잔여임기 이사로 한다. <신설 2022.11.16>

제30조(이사의 추천 및 선출) ① 이사는 회장 당선인이 이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라 총회개최 7일전까지 선거인(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제21조제5항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는 이사 후보자는 회장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축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회장당선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 사람을 이사 후보자로 한다.<개정 2019.11.20, 2022.11.16>

② 회장당선인이 없거나 회장선출이 없는 해에는 회장이 제1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이사 후보자의 추천은 전문성분야와 지역 대표성분야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지역대표성으로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는 시도건축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이사로 선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장에서 다시 추천 한다. 이 경우 선출이 위임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⑥ 선출방법은 투표, 거수, 기립, 이의 유무, 박수 등의 방법 중 총회에서 정한다. 다만, 투표의 경우에는 제36조 내지 제43조의 방법으로 한다.

제2절 감사 선출

제31조(선거공고) 선거공고는 선거일 25일전까지 위원회가 한다. <개정 2019.11.20>

제32조(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확정된 대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11.20>

제33조(후보자 등록) ① 감사 후보가 되고자 하는 정회원은 선거공고일 이후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0>

1. 감사후보자등록신청서

2. 이력서

3. 선거공보 원고

4. 입후보 소견서 <신설 2021.11.17.>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신설 2021.11.17.>

6. 서약서 <신설 2021.11.17.>
7. 건축사 행정처분 증명서(선거공고일기준 직전 3개년도분) <신설 2021.11.17.>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설 2021.11.17.>
9. 기탁금 3백만원

제34조(선거운동기간 및 범위)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0>

1. 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 이 경우 광고회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 선거공보 또는 전자우편, 팩스, 서신 등을 통한 홍보
 3.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등 SNS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
- ② 제1항제2호의 전자우편과 제3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동안 후보자(관계인을 포함한다) 1인당 총 5회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0>

제35조(금지) 후보자는 광고나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동성 문구 등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0., 2021.11.17>

제3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하되, 선거인 1인 1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단일후보의 신임투표의 부결 등으로 선출이 안 된 때에는 총회장에서 대의원 발의로 호선헌 수 있다. <개정 2019.11.20., 2021.11.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투표, 거수, 기립, 이의 유무, 박수 등의 방법 중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신설 2021.11.17.>

제37조(투표소) 위원회는 선거 실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투표소 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0>

1.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38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의 양식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9.11.20>

제39조(투표절차) ① 투표 절차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1.20>

1. 선거인명부와 대조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투표용지 기표
4. 투표함 투입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0조(참관) ① 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실시 3일전까지 3인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한다.

<개정 2019.11.20>

제41조(개표관리) ① 개표는 참관인의 입회 아래 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개표된 투표용지는 당선 확정 후 7일 이내에 낙선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기한다.

제42조(무효투표) ① 투표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② 투표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0>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 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43조(당선확정) ① 당선확정은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1.11.17.>

②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개정 2019.11.20., 2021.11.17>

③ 단일후보에 대하여 제3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시 당선을 확정하며, 낙선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시 후보자로 하여 재선거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1.20., 2021.11.17>

제44조(적용) 이 규정 제3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정 제1장 내지 제2장을 적용하되, 이 경우 회장(임원)을 각각 이사 또는 감사로 한다. <개정 2019.11.20>

제4장 보칙

제45조(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2019.11.20>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선거관계법령 및 관례에 준하며 필요시에는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97년 10월 14일 제정한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1.18>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개정 규정 시행일부터 이사 및 감사선출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장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건축사회	
사무소명			
입회년월일		연락처	(사무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는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입후보 소견서 2. 이력서(상훈포함)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4. 서약서 5. 건축사 행정처분 증명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7. 기탁금 50%</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후보자 (인)</p>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당 선 증

사무소

성 명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감사)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무소명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감사)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입후보 등록 신청시 제출한 일체의 서류가 사실과 다름없으며, **업무상 비위나 사회적 지탄 등의 사실이 없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등록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이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를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행할 것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선거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이 협회로부터 교부받거나, 지득(知得)한 회원 개인정보는 해당회원의 동의 없이 선거운동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선거기간 종료 즉시 일체의 자료를 파기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개인정보 보호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예비)후보자

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감사)선거에 필요한 (예비)후보자등록자의 인적 사항 등의 조회를 통해 피선거권 결격사유 확인 및 선거인의 알 권리 확보

- 수집·이용항목
 - 성명, 생년월일(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사진, 사무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자격증명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

- 수집한 정보 제공대상
 - (회장, 감사)선거의 선거권자인 정회원에 제공

- 보유·이용기간
 - (이용기간) (회장, 감사)선거 선거사무 종료시까지
 - (보유기간) 대한건축사협회 문서규정에 의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선거권 자격 미확인으로 후보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예비)후보자

①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1. 선 거 명 :
2. 후보자 성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퇴 사 유 :

본인은 20 년 월 일 ~ 일 실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감사) 선거에 있어서 (예비)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예비)후보자

①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신청서

선거명	사본의 종류	비고
	<input type="checkbox"/> 일반 사본 <input type="checkbox"/> 전산자료 복사본	

20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감사)선거에 있어 「임원선거관리규정」 제8조제7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선거인명부는 해당회원의 동의없이 선거운동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선거기간 종료 즉시 원본을 반환하고 기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파기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계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신청인은 사본의 종류(일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 일반 사본과 전산자료 복사본중 1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선거사무소 개설(변경) 및 선거운동원 신고서

1. 선거사무소 개설(변경) 승인 신고서

건물명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설치)(변경)	개설예정일

2. 선거운동원 신고서

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속 건축사회	사무소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선임)(교체)	년월일
1						
2						
3						
4						
5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거사무소 개설(변경) 및 본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을 신고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후보자

①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선거운동원은 협회 정회원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 합니다.

<첨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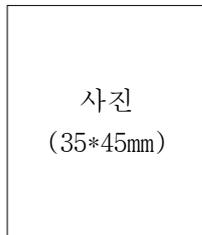
선거사무소 약도

선 거 명	
후보자 성명	
선거사무소 주 소	
선거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약 도	

선거운동원 표찰

발급번호 :

선거운동원 표찰



후보자명 :

성 명 :

사무소명 :

위 사람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해당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된 사람입니다.

20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규격 : 90mm(세로) × 120mm(가로)

<별지 제11호 서식>

협회 정기간행물 광고 승인신청서

광고게재 간행물	광고내용	광고 횟수
월간 건축사지 광고	별지 시안	
건축사신문 광고	별지 시안	

상기 협회간행물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감사)선거에 입후보한 본인의 선거운동(자기광고)을 위해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3항 또는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광고 시안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예비)후보자

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후보자들의 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는 총 10회 이하로 제한되며, 선거기탁금외에 자기부담으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운동(자기광고)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토론회 개최신청서

1. 주 최 자

가. 기 관 명 :

나. 대표자성명 :

다. 소 재 지 : (전화번호 :)

라. 회 원 수 :

2. 개최일시·장소

가. 개 최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 최 장 소 :

다. 참석예정자수 :

3. 토론의 주제 및 진행자·진행절차

가. 주 제 :

나. 진행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소재지	휴대전화

다. 진행절차(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1) 참가자별 발언시간 : 분(1회기준)

(2) 참가자별 발언횟수 : 회

(3) 토론의 진행순서(참가자의 발언순서 포함)

4. 토론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소속	소재지	휴대전화

20 년 월 일 ~ 일 실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임원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1부
2. 후보자토론회 참석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①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1) 시도건축사회 또는 협회 산하기구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2) 진행자 및 토론자는 협회 정회원으로 선거권자에 한 합니다.(선거운동원은 제외)

<별지 제13호 서식>

후보자토론회 참석확인서

1. 선거명 :
2. 개최일시 :
3. 토론회 참석자
가. 후보자 :
나. 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 년 월 일 ()건축사회에서 개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후 보 자 ①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또는 ○○건축사회) 귀중

후보자토론회 불참사유서

1. 선거명
2. 후보자성명

위 본인은 20 년 월 일 ()에서 개최하는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기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증빙자료 ○부

20 년 월 일

후 보 자

①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또는 ○○건축사회) 귀중

※주) 불참사유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